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을 위한 조치 이행요구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9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 현 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강명구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6. 2. 2.
3. 회 부 일: 2026. 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에서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방법 및 기간의 지정</u> <u>2. 그 밖에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u>④ (생략)</u>	<u>⑤ (현행 제4항과 같음)</u>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② -----

현행	개정안
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략) <u><신설></u> 19. ~ 27. (생략) ③ ~ ⑤ (생략)	----- -----. 1. ~ 18. (현행과 같음) <u>18의2.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위원회</u> <u>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u> 19.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그런데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황 및 피해 대응조치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피해예방 조치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통지 경과

- '25.11.29.~30. 쿠팡, 개인정보 “일부 노출” 사고 발생 안내
- '25.12.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 대상 개인정보 노출통지를 유출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재통지할 것을 심의·의결
- '25.12. 7. 쿠팡, 이용자 계정 약 3,300만명 대상 문자메세지로 재통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정보처리자의 미흡한 대처나 방치로 인해 피해가 심화되는 것을 막고, 보호위원회의 감독 아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 시정조치 명령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³⁾ 이와 같은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4조제2항⁵⁾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임.

○ 보호위원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 확산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유출 항목 공지 등 후속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와 같은 후속조치 이행 요구에 관한 사항은 현행 유출통지, 시정조치 명령 등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업 경영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 사법적 판단 영역 침해, 기업의 방어권 제한 등의 우려가 있으며, 행정명령 이행과 보고서 작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 밖에 법제적인 사항으로, 개정안의 조정대상이 되는 법 제34조의 규정은 법률 제21445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2026. 3. 10.에 일부개정되어 2026. 9. 11.에 시행될 예정이므로⁶⁾ 이에 맞추어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개정문 등에 대한 형식적인 보완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108

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4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